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1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평가대상 정원 748명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94명(우정9급 9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우정5급 46명, 우정6급 48명)하며, 개방형직위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 남동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대전 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전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산총괄
- 21. 교육관련 정보화시스템 및 방송시스템 운영
- 22. 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
- 23. 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 포함) 관리 및 운영

제10조제4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9호, 제22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 21. 교육과정의 개발

제23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경기”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인천 남동구를 관할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경기”로, “서구”를 “대덕구”로 한다.

별표 2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3,27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3,271”을 “33,280”으로 하며, 우정서기보 “9,907”을 “9,916”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9.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9.0”를 삭제하며, “우정서기보 9.0”를 삭제한다.

별표 3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3,18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3,182”를 “33,191”로 하며, 우정주사(우정5급) “819”를 “865”로 하고, 우정주사(우정6급) “2,381”을 “2,429”로 하며, 우정서기보 “9,324”를 “9,239”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9.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9.0”를 삭제하고, “우정서기보 9.0”를 삭제한다.

별표 4의 업무 1)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우정주사(우정5급) 46명, 우정주사(우정6급) 48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우정서기보 94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우정공무원교육원) ① · ② (생 략)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삭 제 17. <u>교육과정의 개발</u> 18. · 19.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20. (생 략)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u><신 설></u> 21. (생 략) ⑤ 삭 제 ⑥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우정공무원교육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5. (현행과 같음) <u><삭 제></u> 18. · 19. (현행과 같음) 20. <u>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u> <u>산총괄</u> 21. <u>교육관련 정보화시스템 및</u> <u>방송시스템 운영</u> 22. <u>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u> 23. <u>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u> <u>관 포함) 관리 및 운영</u> 24. (현행 제20호와 같음) ④ ----- -----. 1. ~ 20. (현행과 같음) 21. <u>교육과정의 개발</u> 22. (현행 제21호와 같음) ⑥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12.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상담센터의 운영</u>	<u><삭 제></u>
<u>13. 교육 관련 정보화시스템 개발 등 우정공무원교육원 내 전산업무 관리</u>	<u><삭 제></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u>15. 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u>	<u><삭 제></u>
16. ~ 18. (생략)	16. ~ 18. (현행과 같음)
<u>19. 우정박물관(사이버우정박물관을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u>	<u><삭 제></u>
20. · 21. 삭제	
<u>22. 우정도서실의 관리 및 운영</u>	<u><삭 제></u>
23. 삭제	
<u>24.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예산총괄</u>	<u><삭 제></u>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소속기관별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3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③ (생략)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2 제2호, 별표 3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 예금위험관리과장, 보험위험관리과장, 우

----- 7퍼센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울 강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
 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경기 이
 천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부산 사상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
 의 국장, 부산 연제구를 관할구
 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
 장, 대전 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광주
 ・전남지역(서남권 제외)을 관
 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편집중
 국의 국장, 대구・경북지역(서
 부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4급
 우편집중국의 국장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관할구역으로 하
 는 4급 우체국의 국장, 인천 남
 동구를 관할하는 4급 우체국의
 국장, 경기 -----

 ----- 대덕구-----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u>	<u>33,271</u>	<u><삭제></u>	-33,271
일반직 계	<u>33,271</u>	<u>33,280</u>	+9
•	•	•	
•	•	•	
우정서기보	<u>9,907</u>	<u>9,916</u>	+9
•	•	•	
•	•	•	
<u>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계</u>	<u>9.0</u>	<u><삭제></u>	-9.0
<u>일반직 계</u>	<u>9.0</u>	<u><삭제></u>	-9.0
<u>우정서기보</u>	<u>9.0</u>	<u><삭제></u>	-9.0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u>	<u>33,182</u>	<u><삭제></u>	-33,182
일반직 계	<u>33,182</u>	<u>33,191</u>	+9
·	·	·	
·	·	·	
우정주사(우정5급)	<u>819</u>	<u>865</u>	+46
우정주사(우정6급)	<u>2,381</u>	<u>2,429</u>	+48
·	·	·	
·	·	·	
우정서기보	<u>9,324</u>	<u>9,239</u>	-85
·	·	·	
·	·	·	
<u>2.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계</u>	<u>9.0</u>	<u><삭제></u>	-9.0
<u>일반직 계</u>	<u>9.0</u>	<u><삭제></u>	-9.0
<u>우정서기보</u>	<u>9.0</u>	<u><삭제></u>	-9.0

[별표 4]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제26조 관련)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우편물 집배업무(지방우정청)	748명 (우정서기보 748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우편물 집배업무(지방우정청)	2,252명 (우정서기보 2,25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